##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금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95

발의연월일: 2021. 3. 15.

발 의 자 : 양금희 · 태영호 · 서일준

윤재옥 • 지성호 • 윤두현

성일종 · 송언석 · 김용판

황보승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시·읍·면의 장에게 출생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, 시·읍·면의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,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상한액이 5~10만원으로 약소하여 출생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지적이 있음.

이에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시·읍·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,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신고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제121조·제122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2(출생증명서의 송부) ① 의사나 조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- 1. 출생자의 성별
- 2.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
- 3. 부모(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)의 성명·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(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·출생연월일·국적)
- ② 출생증명서의 작성 및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1조 중 "10만원"을 "20만원"으로 한다.

제122조 중 "5만원"을 "10만원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생증명서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6조의2(출생증명서의 송부) ① 의사나 조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14일 이내에
	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1. 출생자의 성별
	2.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 3. 부모(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 는 모)의 성명·주소 및 주민
	등록번호(부 또는 모가 외국 인인 때에는 그 성명·출생연 월일·국적)
	② 출생증명서의 작성 및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.
제121조(과태료) 시·읍·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	제121조(과태료)
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	
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	<u>20만원</u>

를 부과한다.	
제122조(과태료) 이 법에 따른 신	제122조(과태료)
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	
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	
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	
아니한 때에는 <u>5만원</u> 이하의	<u>10만원</u>
과태료를 부과한다.	